

2. 서북병원 윤리위원회규정

2003.10.15(제정)
2009. 5.20(개정)
2012. 7. 1(개정)
2013. 6. 3(전면개정)
2017. 9. 28(전면개정)
2018. 5. 9(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서북병원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 및 의료서비스향상 관련 사항과 전 직원의 일반적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직원의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하고 위원은 원내 위원으로 간호부장, 약제부장, 원무과장, 결핵1과장, 내과장, 신경과장, 재활의학과장, 가정의학과장으로 한다.

③ 원외 위원(위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진료기획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 위촉) 위원 중 병원 직원이 아닌 위원은 병원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참석 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시 회장의 임무를 수행 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이 지시 또는 의뢰한 사항을 이해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 의결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운영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생명존엄성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9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생명존엄성 및 의료행위에 따른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
- ②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사항
 - 1.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2.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상담
 - 4.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분석
 - 6.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의료윤리의식 제고와 윤리적 갈등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④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⑤ 윤리적 갈등 발생 시 진상조사,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⑥ 윤리적 갈등과 관련한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 ⑦ 환자 입·퇴원 결정과 관련한 의료 윤리적 사항
- ⑧ 장기이식대상자의 윤리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
- ⑨ 직원의 윤리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⑩ 의료진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항
- ⑪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시달하는 사항

제10조(절차) ① 윤리적 문제가 발생 시 해당 부서장(또는 해당 진료과장, 의사, 직원)은 사건경위와 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별표2)를 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경위진술 및 자료제출을 통해 윤리적 갈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등 관련법규와 병원의 미션, 환자의 권리 등을 고려하여 윤리적 갈등을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의결 거친 윤리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권고안 또는 해결방안을 해당 부서(과) 및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⑥ 해당 부서(과)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윤리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지원) 윤리적 갈등의 해결과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지원한다.

제12조(처리 및 집행) ①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병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병원장의 승인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보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집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서면결의) 위원회 상정 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결의

서는 회의록으로 간주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윤리적 갈등해결을 위한 병원차원의 지원을 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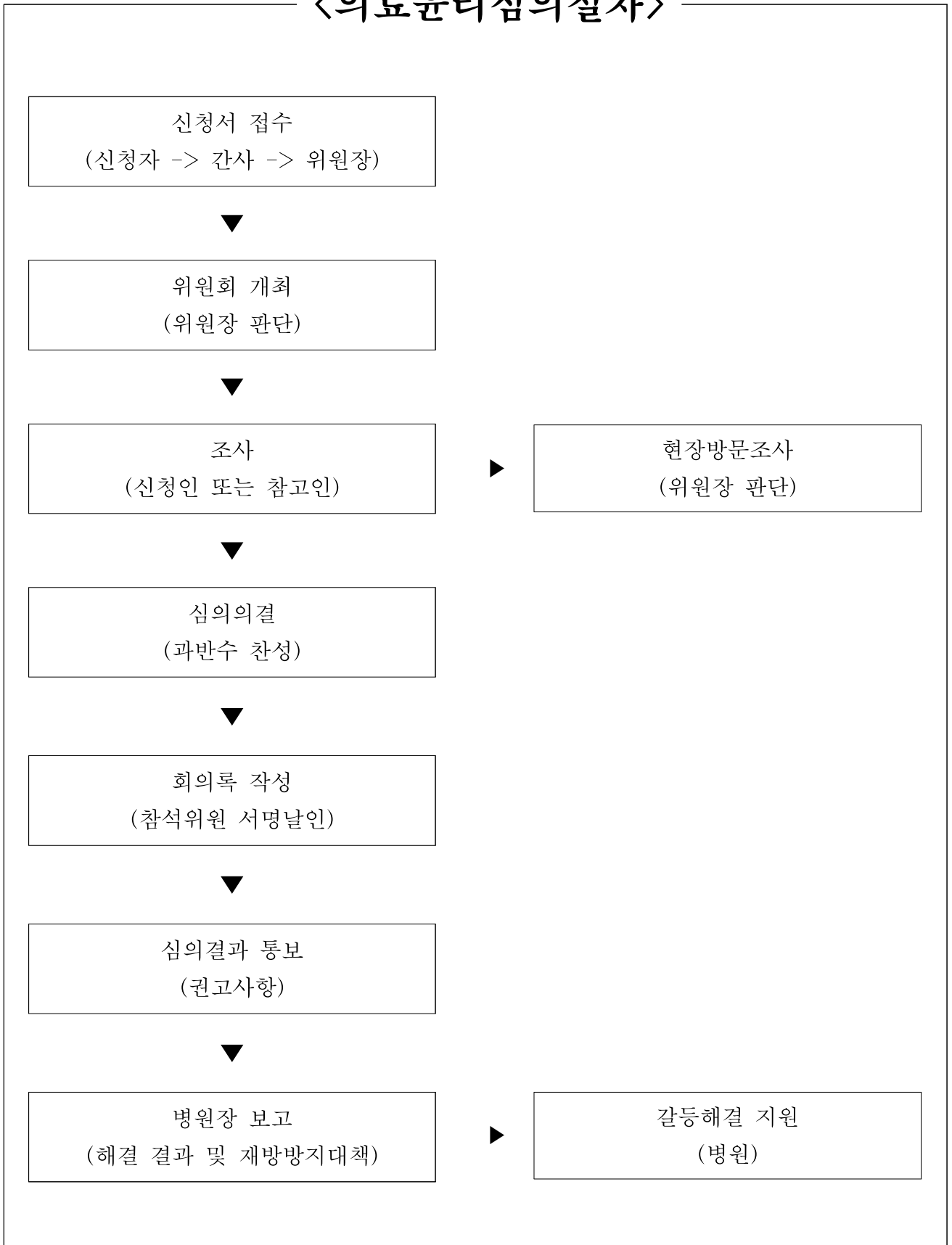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승인책임자	병원장
승인확인일	2018.5.9.

[별표1]

<의료윤리심의절차>



[별표2]

기관윤리위원회 심의신청서							
		결 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간사</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위원장</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간사	위원장		
간사	위원장						
1. 인적사항							
심의대상자		신청자					
① 성 명		④ 소 속					
② 생년월일		⑤ 직 위					
③ 연 락 처		⑥ 성 명					
2. 신청내용							
심의안건	1) 2)						
안전내용	[안전에 대한 개요 설명(구체적 진술)] ※ 붙임, 첨부자료 등						
위 기술한 내용을 기관윤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부서장 :	(서명)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표3]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윤리실천강령

제1장 목 적

제1조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전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고 환자중심 고객만족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들의 기본 자세 등 윤리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원의 기본 업무자세

제2조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은 결핵, 노인성질환, 치매 및 재활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한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전 직원은 환자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3조 환자를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며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존중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행려, 노숙인 및 의료보장 환자를 편견없이 성실히 진료한다.

제5조 환자편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청결한 시설관리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서비스는 즉시 개선하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3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7조 환자에 대한 알권리를 존중하며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진료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 (리베이트 행위제한 등)

- ① 의약품 및 의료장비 납품 업체 등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등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여서는 안된다.
- ② 환자진료 등의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부수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되며, 환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제9조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에 전념하고, 공무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제11조 전 직원은 「서울특별시서북병원윤리실천강령」 및 「서울특별시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5장 윤리강령

서북병원은, 의료가 제1의 임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서북병원은, 항상 구급 진료태세를 완비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보호한다.

서북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협동적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북병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훈련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인다.

서북병원은, 진료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한다.

서북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행위를 공정무사하게 처리한다.

서북병원은, 환자진료의 비밀을 지키고, 환자의 신앙적 관습을 존중한다.

서북병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주민의 보건증진에 노력한다.

서북병원은, 도의적이며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고 타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서북병원은, 환자관리 시설장비 및 진료활동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서북병원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납품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 편의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 받지 않는다